Special Feature

영국의 근로장려세제

Robert Joyce (영국 재정연구소 부소장)

■ 영국 근로장려세제의 역사 및 개요

영국 정부는 시장소득이 충분치 못한 생산가능연령층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소득기반 현금이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금이전제도에서는 근로장려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현재 영국 정부는 근로장려세제에 연간 250억 파운드를 지원하고 있다.

영국 근로장려세제의 기원은 사실상 1970년에 도입된 자녀가 있는 근로계층을 위한 '가족소득보조(Family Income Supplement: FIS)'로 거슬러올라가지만, 오늘날 영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규모 근로장려세제는 1997~2010년에 집권한 노동당 정부가 추진한 것이었다. 1999년 가을에 단행된 일련의 대대적인 개혁으로, 1988년에 FIS를 대체해서 임금근로에 종사하며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여 왔던 비교적 소규모의 '가족세액공제(Family Credit: FC)'는 지원 규모가 더욱 확대된 '근로가구세액공제(Working Family Tax Credit: WFTC)'로 대체되었다. WFTC는 기본 급여액이 높고, 가구소득 증가에 따른 급여 감액률이 낮으며, 육아 비용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등 여러 주요 측면에서 지원이 강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개인 세액공제 지출규모는 1998~1999년에 비해 2002~2003년에 실질적으로 두 배 증가했다.

부분적으로 WFTC는 기존 제도의 논리를 따르면서 이를 확대하여, 일하는 부모들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WFTC는 이전의 제도에 기반을 두면서도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 제도는 1990년대 초에 도입된 미국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의 영향을 받았다. 부모들이 근로소득을 통해 누리는 혜택을 고려할 때 한편으로 육아 비용과 함께 자녀와 함께 보내지 못하는 시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후 시기에 여러 개발국가에서 급속도로 확대된) 복지안전망의 소득기반 혜택을 수급받지 못할 가능성까지 신중하게 가늠해야 하는 집단이라는 인식이 확대된 결과다. 따라서 부모들의 노동시장 참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 고려사항들의 미묘한 균형을 반영한 것이며, 이들이 노동시장 참가 결정 시에 재정적 인센티브에특히 민감하다는 실증적 증거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편부모이거나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인 경우에 이른바 '외연적 한계(extensive margin)'(근로에 종사한다는 조건하에서 몇 시간근로할지를 결정하는 '내연적 한계(intensive margin)'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노동시장 참가여부를 결정)로 나타난다. 근로장려세제는 대부분의 경우 부모들에게 임금근로가 금전적으로 더 유리한 계산법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시도다.

영국의 경우, 비취업 가구(workless household)의 수가 1980년대에 걸쳐 크게 증가하면서 이 집단에 대한 우려가 특히 높아졌다. 당시 비취업 가구가 증가한 데에는 다른 국가들보다 영국에서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편부모가 늘어난 것이 부분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비취업 가구는 빈곤선 미만 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에 더욱 그러했다. 이 문제는 최우선 정책 과제로 인식되었다.

더 나아가, 1997년에 재집권에 성공한 노동당 정부는 아동빈곤 완화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았다. 당시 정부는 2004~05년, 2010~11년, 2020~21년까지 아동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야심찬 목표를 수립하였다. 영국은 아일랜드에 이어 두 번째로 아동빈곤 목표 수치를 도입한 국가로서 유럽연합 차원의 유사한 조치들에 앞서 이러한 방안을 채택하였다. 세액공제를 통해 국가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영국 정부의 아동빈곤 완화 전략의 핵심으로, 저소 득 근로가구의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동시에 우선적으로 가구 내 성인들의 임금근로를 장려하였다.

WFTC는 - 비록 정부의 재정에 의하기는 하지만 - 사용자를 통해 지급되는 환급가능한 (즉, 납세 의무액을 초과할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이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에서 확인된다. 수 급대상은 임금근로에 종사하는 성인이 포함된 자녀가 있는 가구로, 주 16시간 이상 근로에

대해 기본급여가 주어지고, 주 30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에 추가로 '풀타임 할증금(full-time premium)'이 지급되었다. 또한, 장애 할증금과 육아 비용 추가지원금도 제공되었다. WFTC 수급대상을 상대적으로 저소득인 가구로 제한하기 위한 자산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당 소득이 약 90파운드를 초과하는 소득 매 1파운드에 대해 세액공제를 55펜스 감액하였다.

2003년에는 추가로 단행된 일련의 개혁을 통해 오늘날 영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와 구조상 유사한 근로장려세제가 실시되었다. 기존의 WFTC는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 WTC)'와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 CTC)'로 구성된 이원화 제도로 대체되었다. WTC는 자녀가 없는 저소득 근로 가구에 WFTC를 확대 적용하는 효과가 있었다(단, 수급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유자녀 가구보다 더 많은 시간인 주당 30시간을 근무해야 함). CTC는 기본적으로 유자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새로운 자산조사 기반의 현금이전제도로서, 이에따라 추가 혜택이 제공되는 한편 기존의 지원은 일부 폐지되었다. CTC와 WTC는 영국의 현금이전제도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영국 고용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가 담당하지 않고 영국의 국세청에서 모두 관할하며, 사실상 단일 지급액으로 취급하는 단일 규정에 의해 소득에 대한 자산조사를 거쳐, (WFTC의 경우처럼 사용자를 거치지 않고) 가구에 직접 지급된다. CTC는 가구 내 임금근로자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청구할 수 있고, 임금보조금 또는 '보전금(top-up)'이라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세액공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이라는 명칭이 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오히려 유자녀 가구를 위한 복지 안전망의 주요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옳으며, 따라서 이 글의 이후 논의에서는 WFTC와 WTC가 시사하는 바에 주로 초점을 두도록 한다.

■ 세액공제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가?

영국의 근로장려세제가 미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인센티브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장 먼저, 세액공제로 인해 가구별로 최소한 1인 이상이 세액공제를위한 주당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는 임금근로에 종사하도록 재정적 인센티브가 강화됨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현금이전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세액공제로 인해 (자녀 여부와 관계 없이) 미혼 성인과 부부 중 첫 번째 잠재적 소득자가 더 강한 취업 동기를 갖게 된다는 뜻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의 생산가능연령에 대한 현금이전제도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세액공 제는 의도적으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즉,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하며), 이는 가구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액공제는 점차 감소함을 의미한다. 이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위에서 기술한 개인들 중 일부의 경우에는 일단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이 충족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한계실효세율이 높아진다. 즉 근로소득이 특정 수준을 초과하여 증가하게 되면 소득기반 세액공제가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세액공제의 수급요건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임금근로를 하려는 동기는 강화되지만,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높은시급의 일자리를 확보함으로써) 특정 수준을 초과하는 근로소득 상승 동기는 약화된다.

둘째, 자산조사와 근로시간 요건은 모두 - 개인이 아닌 - 가구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부부 중 두 번째 잠재적 소득자의 임금근로 종사에서도 유사한 비유인 효과(disincentive effect)가 종종 발생한다. 첫 번째 소득자로 인해 해당 가구가 이미 근로를 조건으로 하는 세액공제의 수급요건을 확보하였다면, 이로 인해 부부 중 나머지 한 사람의 임금근로 종사에 대한 재정적 동기가 약화될 수 있다. 일을 하게 되면 해당 가구의 소득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가구 단위 자산조사를 통해 세제 혜택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세액공제가 근로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그 명칭에 '근로'를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면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 증가하는 경우 지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일부 사람들의 소득을 늘리고자 하는 동기는 약화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근로장려를 위한 확실한 해결책은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와 같이 모든 복지정책 설계에 존재하는, 한편으로 최소의 자원으로 목표 대상자들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 간의 상충관계는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의 세액공제 설계방식은,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지는 못했지 만, 어디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고심은 분명 엿보인다. 영국의 빈곤과 관련된 큰 고민은 비취업 가구 규모를 줄이는 데에 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활용하여 가구당 적어도 한 명은 근로로 유인하도록 하고, 비용을 억제하고 자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집중 배분하기 위해서는 자산조사로 인해 해당 가구의 소득을 늘리고자 하는 동기 또는 두 번째 잠재적 소득자의 근로 동기를 저해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후자의 사안들은 비취업 가구 문제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한편 노동시장 참가 여부 결정이 인센티브에 민감하다는 학술연구 결과는 이러한 설계방식을 선택한 논거를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근로 여부에 대한 결정이 소득상승 여부보다 인센티브에 더 민감하며 특히 편부모 집단이 근로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 중 두 번째 잠재적 소득자가 첫 번째 소득자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결과:세액공제의 효과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알지 못하는가?

WFTC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첫째, 이 제도는 대규모로 실시되었고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아동빈곤율에 큰 영향을 미쳤다. 너무나 야심차게 정해 놓았던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영국의 아동빈곤이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기록적으로 빠르게 감소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제도의 영향이 컸다(Joyce and Sibieta, 2013).

분명히 아동빈곤에 미친 이와 같은 영향의 상당 부분은 - 사실상, 대부분은 - 저소득층에 훨씬 더 많은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단순하면서도 기계적인 결과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세액공제는 노동시장에서 부모들의 태도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 변화는 대체적으로 제도가 당초 설계되었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여러 연구 결과, WFTC는 그 제도가 특히 중점을 두었던 편부모 취업자 수와, 성인 근로자 1인 이상을 포함한 유자녀 부부의 수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가령, Blundell and Hoynes, 2004). 다시 말해, 세액공제는 영국의 비취업 가구를 급감시키면서 근래 영국 사회

정책의 실질적인 성공에 기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세액공제로 인해 유자녀 부부 중 두 번째 잠재적 소득자(주로 어머니)의 취업률이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에 비해 낮아졌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Blundell and Hoynes, 2004). 이는 앞서 설명한 인센티브 구조에 비추어 예상되었던 효과들과 모두 일치하는 연구결과이다.

최근에는, 학술연구와 정책논의 모두 취업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문제에 더욱 큰 비중을 두기 시작했으며, 여기에는 현행 세액공제 설계가 이상적인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다. WFTC는 정확히 주 16시간만 일하는 편부모 집단을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Browne, Hood and Joyce, 2016). 이는 앞에서도 논한 바 있는, 세액공제가 더 많은 편부모로 하여금 세액공제 수급요건을 충족할 만큼의시간을 일하도록 독려하기는 하지만 (세액공제 일부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시간을 일하려는 동기는 오히려 약해질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과도 일치한다.

이는 근로장려세제 설계 시 항상 고려해야 할 상충관계의 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뀐 것인가?

첫째, 정책 입안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과 맥락이 바뀌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빈곤과 관련 해서는 비취업 가구가 영국의 가장 큰 문제였다. 현재는 비취업 가구가 줄어든 반면에, 점점 더 많은 근로자의 소득 수준이 크게 저하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물론 그 전에도 그러한 현상은 발견되었다. 따라서 현재 영국에서 빈곤과 관련하여 핵심 이슈는 '근로빈곤(working poverty)'이다. 영국에서 공식적인 빈곤선 미만의 사람들 대부분이 최소한 성인 1인 이상이 유급 노동에 종사하는 가구에 속한다(Cribb, Norris Keiller and Waters, 2018).

이와 더불어, 저임금의 원인에 대해서도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저임금의 원인은 경력에 따른 임금상승(wage progression)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는 상당 부분이 임금 상승률의 차이 문제다. 이 집단에서 임금은 경력 후반보다 경력 초기에 훨씬 더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Costa Dias, Joyce and Parodi, 2018). (특히, 저숙련직 및 여성의)임금상승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점점 더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근로공급(work intensity)과 임금상승의 관계에 대해서도 더 많은 점들이 밝혀지고 있다. 특히 풀타임 대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 임금상승이 거의 차단되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가 있는 여성들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줄일 목적으로 파트타임을 택할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파트타임 일자리는 남녀 임금격차의 주요 원인이 된다. 여성이 자녀가 좀 더 자란 후에 풀타임으로 복귀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임금에서 과거 파트타임직 경력은 거의 인정되지않기 때문에 복귀 시점의 시급에도 여전히 불리하게 작용한다(Blundell et al., 2016; Costa Dias, Joyce and Parodi, 2018).

임금 결정에 대해 밝혀진 이러한 내용들이 세액공제의 장기적 영향을 고찰하는 연구에 통합되기 시작했다. 20년 전에는, 세액공제의 장기적 효과가 단기적 효과보다 더 클 것으로 기대되었다. 즉 일단 충분한 수의 사람들을 일자리로 유인하면, 그 이후에는 그들의 노동시장소속감이 커지고, 경력을 쌓으면서 임금은 점차 늘어나고 결국에는 정부로부터 임금 보전금을 받지 않아도 되면서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결국너무나 낙관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액공제가 부모들의 임금과 노동시장소속감에 미치는장기적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음 두 가지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다, 첫째, 저숙련 근로자들은 대체로 경력이 늘어도 임금은 크게 늘지 않으며, 둘째, 특히 파트타임근로자의 경우에 그러하듯이, 세액공제는 근로가 어느 정도는 장려되지만 (자산조사 때문에) '너무나 많이' 장려되지는 않는 설계 구조를 갖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장기적 효과를 억제한다 (Blundell et al., 2016).

오늘날 영국이 직면하고 있는 빈곤 문제의 새로운 성격을 감안하면, 영국의 근로장려세제가 가구당 1인 이상을 임금근로에 종사토록 장려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근로소득 상승 촉진에는 중점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전보다 더 의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영국이 안고 있는 과제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상승에 대해 추가로 알게 된 사실들을 고려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인센티브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진지한 연구가 필요할수 있다.

정치·정책적 논의에서, 세액공제의 설계는 또 다른 이유로 면밀한 조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최근 몇 년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대규모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지출 감소 노력(그리고 그보다 정도는 약하지만 증세 노력)의 일환으로 세액공제 규

모가 줄어들었다. 근로장려세제로 인한 막대한 국가재정 부담은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감축의 주된 동기가 되었다.

그러나 세액공제 감축 주장을 둘러싼 정치적 담론을 통해, 이러한 세액공제가 "사용자들이 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생각이 널리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이러한 임금보조금은 부분적으로 사용자에게 주어진다는 주장이다. 즉 임금보조금 덕택에 기업들은 임금보조금이 없을 때보다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므로, 세액공제로 인한 혜택의 일부는 근로자로부터 기업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물론 원칙적으로, 모든 보조금은 해당 시장의 구조에 따라 시장의 공급 또는 수요 측면 또 는 둘의 결합된 형태에 주어지게 된다. 특히 저숙련 근로자의 경우, 구직은 매우 협소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노동에 대한 경쟁은 크지 않을 수 있으며(Manning and Petrongolo, 2017), 이는 사용자들이 세액공제로 인한 이득의 상당 부분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늘어나고 있다. 즉, 정부가 제공하는 임금보전금이 커 지면, 근로자들의 총근로소득은 이전과 동일하고 경합을 통해 임금을 끌어올리는 대체 사용 자도 없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임금을 억제하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많은 근로자들을 유치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액공제의 영향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매우 적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건에 불과하다. 이 연구에서는 사용자들이 WFTC의 혜택 중 적지만 상당한 의미 가 있는 부분을 가져간다고 보았다(Azmat, forthcoming). 하지만 WFTC는 급여명세서를 통 해 지급되며 따라서 사용자들이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2003년 이후 세액공 제 제도에서는 이와는 달리 이전금이 가구에 직접 지급된다. 이는 사용자들이 세액공제를 통 해 확보할 수 있는 이익의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용자들이 얻는 이익의 수준이 세액 공제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 및 지급 수준 내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여러 다양한 유형의 노동시장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등, 세액공제의 영향에 관하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논의할 가치가 있는 마지막 이슈는, 세액공제가 다른 복지제도와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이다. 전후 영국에서 복지제도가 확대되면서 여러 제도들이 서로 겹겹이 쌓여온 과정에서 가장 최근에 대규모 세액공제 확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런 이

유로 자산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복잡한 복지제도가 형성되었고, 한 번에 일관되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 면에서 자의적이며 서로 중복된다. 그 결과 복지제도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처리 절차도 복잡하다. 자산조사에 의한 주요 급여제도들이 여러 다른 정부부처의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급여 수급 신청도 별도로 해야 한다. 제도들 간에 복잡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세액공제는 주거급여(저소득 임차인의 주거비용 지원을 위한 현금이전)의 자산조사용 소득에 산입되며, 이는 세액공제 혜택이 때로는 주거급여 감액을 통해 부분적으로 '환수'됨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의 인센티브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세액공제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세액공제와 주거급여가 모두 감소할수 있고, 이로써 세액공제 단독의 경우보다 저해효과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이는 제도설계상 의도된 결과가 아니라, 이전의 복지제도에 또 다른 제도를 추가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다.

■ 최근 동향

이러한 우려들로 인해 최근에 영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세액공제를 포함한) 여러 다양한 범주의 정부지원이 현재 '보편수당(universal credit)'이라는 단일 제도로 통합되고 있다. 그 기본 개념은, 가구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현행 제도에서 그렇듯이) 다양한 요소들에 적용되는 여러 자산조사의 결과를 총합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 규정에 의한 단일 자산조사를 활용하여 정부의 현금이전 총액을 줄인다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저소득 근로가구에 높은 수준의 소득 보전금은 계속해서 지급되는 반면에, 정해진 주당 근로시간를 충족한 가구의 경우 지원금이 '급변'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향후 나타날 주요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는 세액공제의 핵심 요건인 '근로시간 기준선'이 폐지되면 어떠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날지이다. 또한 현재 분리되어 있는 실업 및 근로연계급여와 세액공제를 통합 운영하게 되면서, 영국 정부는 현재는 실업 및 근로연계급여에만 적용하고 있는 구직요건을 모든 수급자들에게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다시 말해, 취업한 상태에서 보편수당을 청구하는 수급자가 수당을 지속적으로 수급받기 위해

서 더 높은 보수의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소득 상승이 나타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바람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전반적으로, 보 편수당이라는 실험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근로를 독려하면서도 취약계층은 보호할 수 있 는 최선의 복지제도 설계방안에 대한 사고의 진화를 보여주는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것이다.

KLI

참고문헌

- · Azmat, G., "Incidence, Salience and Spillovers: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Tax Credits on Wages," forthcoming in Quantitative Economics (https://docs.google.com/viewer?a=v&pid=sites&srcid=ZGVmYXVsdGRvbWFpbnxnaGF6YWxhYXptYX R8Z3g6NjkwZTkwYThjZDQ1MTRjMA).
- · Blundell, R. and H. Hoynes(2004), "Has "In-Work" Benefit Reform Helped the Labour Market?," in Blundell,R., Card, D. And Freeman, R.(eds.), Seeking a Premier Economy: The Economic Effects of British Economic Reforms, 1980-2000.
- · Blundell, R., M. Costa Dias, C. Meghir and J. Shaw(2016), "Female Labour Supply, Human Capital, and Welfare Reform," *Econometrica* 84(5), pp. 1705-1753.
- Browne, J., A. Hood and R. Joyce(2016), "The (changing) Effects of Universal Credit," Chapter 10 in Emmerson, C., P. Johnson and R. Joyce(eds.), *The IFS Green Budget* 2016.
- · Costa-Dias M., R. Joyce and F. Parodi(2018), "The gender pay gap in the UK: children and experience in work," IFS Working Paper 18/02.
- · Cribb, J. A. Norris Keiller and T. Waters (2018), "Living Standards, poverty and inequality

in the UK: 2018," IFS Report 145.

- Joyce, R. and L. Sibieta(2013), "An Assessment of Labour's record on poverty and inequality,"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9(1) (https://academic.oup.com/ oxrep/article-abstract/29/1/178/402517/An-assessment-of-Labour-s-record-onincome).
- · Manning, A. and B. Petrongolo(2017), "How Local Are Labor Markets? Evidence from a Spatial Job Search Model", *American Economic Review* 107(10), pp.2877-2907.